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조치 강화 등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04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제221690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조치 강화 (안 제19조의3)	3
나.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 금지 명시 (안 제49조제2항제3호 신설)	9

I.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제221690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2. 20.

다. 회 부 일 : 2026. 2.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 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 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기구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기구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49조제2항).

3. 검토의견

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조치 강화 (안 제19조의3)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교통사고</u>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u>방호울타리</u>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 ----- <u>교통사고</u> 또는 <u>안전사고</u> ----- ----- <u>방호울타리</u> , <u>조명시설</u> ----- -----.
<신설>	②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안전관리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원관리청¹⁾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도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의 유형에 ‘조명시설’을 명시하며(안 제19조의3 제1항),

공원관리청에게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이 법에 따른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공원²⁾으로, 1,500m² 이상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제한 기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10,216개가 결정³⁾되어 있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 2024년 도시계획시설현황 통계('25.7.22.)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9조의3은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의무화한 것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

다만,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9조의3은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한정하여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의 이용·관리에 있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어린이공원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⁴⁾.

한편, 현행법 제19조의3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의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는 규정하면서도, 물리적 시설의 설치 외에 ‘안전관리 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는 현행법 제22조⁵⁾에 따라 일반적인 도시공원에 대한 안전조치가

4)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도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명시설과 같은 시설의 설치·관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생활권 공원

4-1-2. 어린이공원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하) 어린이공원은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명시설, 표지판 등과 같은 시설의 설치·관리가 필요하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2025년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사고 분석결과’(2026. 2.)⁶⁾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놀이기구 설치장소별 안전관리자·안전감시원 등을 통한 예찰활동(예방적 순찰·점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바, 어린이놀이기구와의 밀접한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공원에서도 예찰활동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의 어린이공원 내 조명시설 등의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6)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에 따라 연간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한 결과임. 해당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는 2025년 기준 12,329개로 전체 어린이놀이기구 84,749개의 14.5%를 차지하고, 2025년 발생한 안전사고 177건 중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16건(9.0%)으로 주택단지(73건, 41.0%) 및 학교(58건, 32.6%)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2025년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장소별 사고현황 >

(단위: 개, 건)

구분	시설수	사고건수	사고건수 대비 비율	시설 수 대비 비율
합계	84,749	177	100%	0.21%
주택단지	45,673	73	41.2%	0.16%
학교	6,917	57	32.2%	0.82%
도시공원	12,329	16	9.0%	0.13%
놀이영양소	1,813	11	6.2%	0.61%
유치원	7,327	9	5.1%	0.12%
목욕장	83	4	2.3%	4.82%
복지시설	420	3	1.7%	0.71%
박물관	97	1	0.6%	1.03%
식품업소	1,353	1	0.6%	0.07%
육아지원센터	128	1	0.6%	0.78%
어린이집	7,090	1	0.6%	0.01%

※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사고 분석결과’, 2026. 2.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법 제22조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의무의 이행 주체는 현행법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7)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로서 공원관리청을 비롯하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와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민간공원추진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안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 의무의 이행 주체를 현행법 제22조와 동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19조8) 및 제22조에서 도시공원의 안전기준과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설치의 세부기준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조명시설 설치와 사고예방이 가능하며9),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원 순찰을 공원관리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 범죄예방 등 경찰·자율방범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의무이행을 위한 인력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¹⁰⁾이 가중될 우려¹¹⁾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유사하게, 개정안의 내용이 공원관리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거나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

제출기관	안 제19조의3에 대한 제출의견
서울특별시	◦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서 공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 규정 ◦ 법체계상 순찰·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사항도 동 규칙 조항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마땅
경기도 화성특례시	◦ 순찰은 범죄예방 등을 위해 경찰·자율방범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공원관리청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판단

9) 국토교통부는 조명시설 설치의 경우 모든 도시공원 내 주요활동구역*과 CCTV 설치장소**에는 조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법령 개정이 불필요하고, 안전관리 조치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10조에서 다루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 공원입구, 통로, 주차장, 표지판, 주요활동구역에는 충분한 조명 설치

** 공원입구,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감시가 필요한 위치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위치

10)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조명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대상지 및 수량, 단가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확정적이고, 어린이공원별 안전관리 조치에 따른 순찰인력 증원, 조직재편 및 장비확보 수요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정이어서 현 시점에서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예산정책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제2216904호)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6. 2. 23.).

11)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도 어려운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나.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 금지 명시
(안 제49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생략)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2. (현행과 같음) <u>3.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u>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 현행법 제56조제2항¹²⁾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유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유흥시설¹³⁾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일종으로 그네 및 미끄럼틀 등을 의미하는데,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유흥시설 주변에서 음주·흡연 등의 행위가 빈발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원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바,

개정안은 유흥시설 등의 장소·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국민건강진흥법」¹⁴⁾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흥시설

14) 「국민건강진흥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 또는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¹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각종 도시공원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공원에서의 금주·금연을 「국민건강진흥법」에서 통합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2211043호)¹⁶⁾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15)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2211043호)

현행	개정안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 ③(생략) <신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는바,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각종 도시공원에 대하여 금주·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어 중복규제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진흥법」에서 통합하여 다룰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유사한 취지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

제출기관	안 제49조제2항제3호에 대한 제출의견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내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규제는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기 시행 중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혼란이 우려되어 현행유지 필요 * 음주행위 : 「국민건강진흥법」 제8조의4 및 서울시 조례 - 흡연행위 :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및 서울시 조례
경기도 화성특례시	「국민건강진흥법」 제8조의4, 제9조에 따라 음주·흡연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지역 현황에 맞게 조치 중
충청북도 청주시	「국민건강진흥법」 제8조의4,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 내 음주·흡연을 금지행위로 기규정

문 의 처	02)6788-5578
-------	--------------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 -----. ③ (현행과 같음)